



1-2 입국항에서의 수속

입국항에서 중장기체류자로서 신규로 상륙이 허가되면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. 단, 당분간은 나리타, 하네다, 중부, 간사이의 4 공항뿐입니다. 체류카드를 교부 받은 사람이 주거가 정해지면 그 주거가 있는 시구청촌 창구에 체류카드를 가지고 가서 주거지를 신고합니다.

입국항에서 체류카드가 교부되지 않고 여권에 「체류카드는 후일 교부한다」는 기재가 된 사람은 주거지가 정해지면 그 주거가 있는 시구청촌 창구에 여권을 지참하고 거주지를 신고합니다. 그 후에 신고가 있었던 주거지로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체류카드가 우송됩니다.

1-3 시구청촌에서의 수속

체류카드에 현재의 거주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시구청촌 창구에 가서 기재를 받습니다. 다른 시구청촌에 이사할 때는 사전에 전 주소의 시구청촌 창구에서 전출 신고를 하고 새로운 주소(주거지)의 시구청촌 창구에서 전입 신고를 합니다만, 시구청촌 창구에서 전입 신고(동일 시구청촌 내라면 전거신고)를 할 때에 체류카드를 제시하면 입국관리국에도 주거지 변경신고를 한 것이 됩니다.